

자연과학대학 포상위원회 연구부분 평가절차 내규

1. 추천홍보: 매년 1월 중순 이전까지 당해연도 우수교수 포상후보 추천을 자연대학장의 명의로 공고한다.
2. 추천 접수 마감 : 매해 2월말까지 추천된 서류를 그 대상으로 한다.
3. 일차 서류 평가 : 본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접수된 서류를 점검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10인 이내의 대상자를 일차 선정한다. 객관적 평가의 기준은 매년 위원회에서 정한다.
4. 국내평가 : 본 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각 대상자별로 2인의 국내 평가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다.
5. 국외평가 : 국내평가를 기초로 하여 3인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분야의 국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6. 최종추천 : 이상의 평가를 종합하여 2인 이내의 최종 수상자 후보를 결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한다.

특별 규정 :

- 1) 1999년도의 평가는 시행 공고 및 추천에 이르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 대상자를 5인으로 선정하여 국내 및 국제 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 2) 1999년도의 객관적 평가의 기준은 SCI 및 Math Index에 다음의 기준 이상 citation된 논문을 그 대상으로 한다.

수학과, 전산학과, 통계학과	3건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10건
천문학과, 지질학과, 해양학과, 대기과학과	5건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 내규

전체 승진 대상자 중 승진 비율은 최근 2년간 평균이 80% 이하가 되도록 하되 2006년 7월 1일 이후에 부교수로 승진임용된 교원과 신규임용된 교원에 적용한다.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물 기준에 관한 내규

제정 2014. 3. 6.

개정 2019. 7. 2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이하 기금교원 포함)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시 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시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서울대학교의 교원 임용 관련 규정 및 그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세부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실적물의 범위) ①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내규」 제6조제2항의 국제적 수준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SCI(science citation index) 또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열거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 저서(번역물 및 편저서 제외)

② 단, SCI 또는 SCIE에 포함되지 않은 학술지 및 학술회의 논문집에 대해서는 학부(과)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 대한 인지도, 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세부 학문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SCI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신규채용 시 연구실적물의 범위) ①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 규정」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심사를 거쳐서 게재되는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 박사학위논문
3. 저서(번역물 및 편저서 제외)

② 다만, 심사를 거쳐서 게재되는 전문적인 학술지 논문 또는 Proceeding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 학부(과)장이 정규학술지로 인정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심의 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인정기간 및 편수 등) ①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및 편수는 서울대학교의 전임교원 임용 관련 규정과 그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적물의 게재 일자란 인쇄된 학술지에 게재된 일자 또는 온라인(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존재하는 업적물에 한함) 게재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에서 인정된 실적물은 게재 일자를 확정하고 추후 변경할 수 없다.

③ 심사대상 기준일(신규채용인 경우는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임용 예정일 이전에 출간되는 실적물은 게재 예정일이 표시된 게재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2014.3.6.)

1.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3.)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내규

제정 2014.03.06.
개정 2015.10.30.
개정 2017.06.09.
개정 2018.09.11.
개정 2019.02.27.
개정 2019.07.2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이하 기금교원 포함)의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시 적용될 사항에 대해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 이 내규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등 상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제출, 접수된 제반 자료는 교원의 인사와 관련하여서만 적용한다.

제3조(추천 절차)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이하 “임용”) 대상자의 추천은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 ① 학장은 임용 심사 대상자를 임용 예정일 7개월 전까지 해당 학부(과)장에게 통보하고, 심사대상자는 임용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학부(과)장에게 임용 심사를 신청한다.
- ② 학부(과)장은 학부(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대상자의 임용 추천 여부를 심사한 후 임용 대상자의 명단, 제5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연구실적물, 각 학부(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제4조의 심사 결과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예정일 4개월 전까지 대학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대학 인사위원회는 임용 대상자의 연구 업적에 대한 교내·외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학장은 그 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임용대상자를 추천한다. 단, 부교수 또는 교수 승진임용대상자의 경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법 프로그램 이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학부(과) 심사위원회)① 학부(과)장은 각 학부(과) 내규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임용 예정인 직급 이상의 교원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책임을 진다.

③ 심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의 분야별 배점 및 평가기준과 학부(과) 내규에 따라 임용 심사 대상자의 교수업적을 교육활동[별표2], 연구활동[별표3], 봉사활동[별표4], 기관장 평가[별표5], 가산점으로 나누어 심사하고 평가결과를 [별표1]에 작성한다. 단,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전공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계 최상급 전문가 5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서 심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적 권위자로 선정된 해당 분야 평가자들에 대한 소개
2. 평가자들에게 평가 의뢰한 편지 사본
3. 5인 이상의 평가자 회신 사본

4. 추천서 내용 평가 및 회의록

제5조(재임용, 승진임용 연구실적물 요건) 각 직명별 재임용, 승진임용의 연구실적물 요건은 별도로 정하는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물 기준에 관한 내규」를 충족하고 서울대학교의 관련 규정과 그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기준) ① 부교수 정년보장임용의 연구실적 평정기준은 별첨 1과 같으며, 정년보장임용의 각 학부(과)별 연구실적 평정기준은 별첨 2와 같다.

② 별첨 1, 2의 국제적 수준 연구실적물의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물 기준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③ 정년보장임용을 위한 각 학부(과)별 연구실적 평정기준(별첨 2)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 칙(2014. 3. 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 승진임용 규정 및 정년보장 임용규정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법 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사항은 2014년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에 한해 적용 한다(단, 타교 경력이 있는 신규 임용 교원이 전 근무지의 유사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면제 가능)

부칙(2018. 09. 11.)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9.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생명과학부 소속 부교수는 개정전 [별첨2] 「정년보장임용 학부(과)별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9. 07. 23.)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물 평정기준

[별첨 2] 정년보장임용 학부(과)별 평가 기준

[별표 1] : 대학교원 (재계약, 승진, 정년보장)임용심사 평정 총괄표

[별표 2] : 교육활동 평가기준 및 평가표

[별표 3] : 연구활동 평가기준 및 평가표

[별표 4] : 봉사활동 평가기준 및 평가표

[별표 5] : 기관장 평가기준 및 평가표

[별첨 1]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기준

연구 및 교육실적물의 범위 및 평가기준

- 조교수 이상의 본교 재직기간 중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주요학술단체 및 권위 있는 기관에서 수여한 학술상 또는 서울대 학술연구상, 자연대 연구(대)상 수상 경력
- 2.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 합이 별첨2에서 각 학부(과)별로 정하는 해당 분야 세계 최상 위급 대학의 평균치 이상인 경우
- 3. 본인이 주요저자 (제 1저자, 책임저자, 교신저자, 또는 기타 연구 및 논문작성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된 자)로서 발표한 논문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1)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 지수가 가장 큰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의 10배 이상 피인용된 논문 1편 이상 또는 5배 이상 피인용된 논문 2편 이상
 - (2) 해당 학부(과) 교원들이 본교 재직 시 주요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의 최대 피인용 회수를 능가하는 경우
- 4. 제 3자에 의한 우수 논문 평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는 경우
- 5. 서울대 교육상 수상 경력

[별첨 2] 정년보장 임용 학부(과)별 평가 기준

학부(과)	정년보장 임용 평가 기준
수리 과학부	<p>I.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 기준</p> <p>자연대 연구실적물 기준에 따라 다음 ①, ②, ③, ④ 항 가운데 한 항목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p> <p>① 정년보장임용 예정일로부터 지난 5년간 (이하 ‘지난 5년간’) 발표한 논문들이 출판된 학술지의 영향력지수의 총합을 5로 나눈 값이 JCR 해당분야의 기준년도 영향력지수 기준으로 상위 20% 이내</p> <p>② 지난 5년간 발표한 논문 두 편이 JCR 해당분야의 당해 연도 영향력지수 기준으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술지에 게재</p> <p>③ 지난 5년간 발표한 논문 한 편이 JCR 해당분야의 당해 연도 영향력지수 기준으로 상위 5% 이내에 드는 학술지에 게재</p> <p>④ 지난 5년간 발표한 논문 한 편의 피인용 횟수가 JCR 해당분야의 기준년도 영향력지수 최고치의 5배 이상. 단, 총설 논문 위주로 출판하는 학술지는 제외한다.</p> <p>⑤ (예외 규정) 학술회의 프로시딩 논문의 경우, 세부 분야의 특수성, 동일 내용이 일반 학술지에 게재되었는지 여부, 학술대회 주관기관, 학술대회의 인지도, 학술대회의 논문 채택률, 피인용 횟수 등 여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수리과학부 인사위원회에서 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JCR에 포함된 영향력지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수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p> <p>II. 논문의 해당분야 및 학술지의 당해 연도 영향력 지수</p> <p>① 논문의 해당 분야는 그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를 포함하고 있는 JCR 수학 분야 혹은 응용수학 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두 개 이상의 분야에 포함되거나 두 분야 이외의 분야에 포함된 경우의 해석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② 각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당해 연도 영향력지수는 해당 논문이 게재된 연도의 JCR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이것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가까운 연도의 JCR 통계를 이용하되, 해당 학술지의 영향력지수의 추세가 매우 불안정한 경우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의 평균값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③ 지난 5년간 발표한 논문들의 해당 분야가 여러 분야인 경우 위 I 항의 해당분야는 수학이나 응용수학 분야 중 하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의 각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영향력지수는 수학이나 응용수학 분야 중 하나를 정하여 환산한 값을 사용하되, 환산은 논문이 해당분야에서 p%이면 당해 연도 수학과분야의 p%에 해당하는 영향력지수를 그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의 영향력지수로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p> <p>④ 위 I 항의 JCR 해당분야의 기준년도는 정년보장임용 예정일이 N년일 때 N-3년으로 한다.</p> <p>III. 기타</p> <p>① 주요학술단체 및 권위 있는 기관 (자연대 규정 제6조에 따른 [별첨 1] 1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의 발행기관 2. 자연대 타 학부에서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 3. 수리과학부 인사위원회에서 제1호, 제2호에 상응한다고 판단하는 기관 <p>② 최상위급 대학은 UC Berkeley로 한다. (자연대 규정 제6조에 따른 [별첨 1] 2호)</p>
통계 학과	<p>I.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에서 정하는 교수업적평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 2. 재직 기간 중 통계학과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의거한 업적총점이 80점 이상 3. SCI급 학술지에 연평균 70점 이상 게재. 단, 업적 인정비율은 통계학과 교수업적평가 기준의 연구실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출 4.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만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대상 기간 중 통계학과가 정한 일급학술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2편 이상 게재 (2) 심사대상 기간 중 통계학과가 정한 특급학술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1편 이상 게재 단, 특급학술지와 일급학술지는 통계학과가 정한 범위내의 학술지임.

학부(과)	정년보장 임용 평가 기준
물리· 천문 학부	<p>I.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 기준</p> <p>정년보장 추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학부의 정교수회의에서 정교수회의 의결 절차를 따라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상위급대학의 영향력 지수(자연대 규정 제6조에 따른 별첨1의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전공 : Stanford University 물리학과 전임교원의 3년간 평균 ○ 천문전공 : MIT, UIUC, Yale 3개 대학의 평균 2. 해당분야에서 영향력 지수가 가장 큰 학술지(자연대 규정 제6조에 따른 별첨1의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전공 : Physical Review Letters ○ 천문전공 : Astrophysical Journal 3. 제3자에 의한 우수논문 평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자연대 규정 제6조에 따른 별첨1의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전공 : 동 조항을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자격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천문전공 : 국제학술지를 Nature 및 Science로 제한
화학부	<p>I.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적인 연구 업적이 인정되는 경우 학부 인사위원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정년보장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업적 수준은 아래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 부교수 이상 재직기간 중 또는 지난 5년 동안 교신저자 SCI 논문 Impact Factor의 합이 50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수준 <p>II.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대상자의 업적평가에서 고려되는 주요 학술단체 및 권위 있는 기관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의 발행기관, 자연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 타 학부(과)에서 인정하는 단체 및 기관, 그리고 화학부 인사위원회에서 이에 상응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및 기관에 준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2. 해당 분야 최상위급 대학은 BK21 화학·분자공학사업단의 벤치마킹 대학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에 준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3.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지수가 가장 큰 학술지의 영향력지수는 세부분야 전문 학술지 중 총설을 제외한 3개의 최우수 전문 학술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4. 우수 논문평이 게재된 국제학술지는 총설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 전문 학술지와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학술지에 준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생명 과학부	<p>I.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 기준</p> <p>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정년보장 임용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신저자로서 Cell, Nature, Science 논문 게재 혹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상용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 2. 조교수 및 부교수 재직 전체기간(타기관 포함) 동안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 중 3편 이상이 SNIP 지수 2.5 이상 또는 JCR IF 10.0 이상 또는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상용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 단, 총설 논문은 제외하며 SNIP 지수와 JCR IF는 출판된 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함. 공동 교신저자의 경우, 해당 지수 × 0.7로 환산하며, 석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p>II. 생명과학부 전임교수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물은 서울대학교의 승진임용 관련 규정과 그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를 충족시키면서 본 내규에서 정하는 세부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p>

학부(과)	정년보장 임용 평가 기준
지구 환경 과학부	<p>항목별로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업적물 산정 기간은 서울대학교에서 해당직급 재직 중 최근 4년간(부교수 정년보장) 또는 서울대학교 재직 중 최근 5년간의 업적으로 한다. 타 기관에서 재직 중 서울대학교에 임용되어 업적물 산정 기간이 짧을 경우 그 적용 범위는 지구환경과학부 전임교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p> <p>I.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 기준 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제7호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중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경력 서울대학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주요학술단체 및 권위 있는 기관에서 수여한 학술상(이에 대한 관정은 학부인사위원회에서 함) 또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또는 자연과학대학 연구상 수상 2. 영향력 지수 부교수 또는 교수 재임 기간 중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영향력 지수 합의 연평균이 3 이상 3. 논문 수 본인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해당 직급 재직기간 동안 연 평균 2편 이상 4. 피인용 횟수 대상 논문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에 한정한다. 피인용 횟수 20회 이상 논문 1편 이상, 또는 10회 이상의 논문 2편 이상 5. 논문 평론 가. 제3자에 의한 우수 논문 평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나. 국제학술지라 함은 지구환경과학 분야 및 관련 분야의 SCI 학술지를 말함 6.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7. 정성평가와 지구환경과학부 연구 및 교육 부분 자체 승진기준 통과 <p>II.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기준 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제6호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5호중에서 2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경력(제 I 항제1호와 동일) 2. 영향력 지수 조교수 재임 기간 중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영향력 지수 합의 연평균이 10 이상 주저자는 제 1저자를 말한다. 3. 피인용 횟수 대상 논문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에 한정한다. 피인용 횟수 40회 이상 논문 1편 이상, 또는 20회 이상의 논문 2편 이상 4. 논문 평론 (제 I 항제5호와 동일) 5.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6. 정성평가와 지구환경과학부 연구 및 교육부분 자체 승진기준 통과

학부(과)	정년보장 임용 평가 기준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 공위 전공 관련 분야로 임용된 자연대 전임교원에 해당	<p>I.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 기준</p> <p>부교수 재직 기간 중 심사 전 5년 동안 「SCI(SSCI 혹은 A&HCI) 학술지」에 100점 이상의 연구 논문을 포함하여 「SCI(SSCI 혹은 A&HCI) 학술지」 또는 「학진 등재 학술지」에 300점 이상의 연구 논문 출판(「학진 등재 학술지」 논문은 SCI 논문의 0.5로 평가함) 연구 저서는 SCI 논문의 0.5로 평가함. 단, Harvard, MIT, Princeton, Yale, Cambridge, Oxford, Johns Hopkins, Stanford, Chicago 대학 출판사처럼 외국의 저명 대학출판사나 이에 상응하는 권위를 가진 출판사에서 출판한 저서는 SCI 논문의 1.0으로 평가함</p>

별표 1

대학교원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심사 평정 총괄표

자연과학대학

대 상 자		소속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부		평정점			비 고
구분		직명 : 성명 :		1차	2차	평균	
평정영역 (평가비중)	구분	평가기준	평점	1차	2차	평균	비 고
(1) 교육 활동 (40점)	(1) 책임시간		15				
	(2) 학위배출		15				
	(3) 강의평가		5				
	(4) 기타		5				
	소 계		40점				
(2) 연구 활동 (40점)	(1) 연구실적물		20 (심사위원평가)				
	(2) 총괄연구실적		15	10			
				5 (심사위원 평가)			
	(3) 그 밖의 연구활동		5				
소 계		40점					
(3) 봉사 활동 (10점)	교내활동 및 교외활동		10				
	소 계		10점				
(4) 기관장평가 (10점)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개인생활의 청렴도, 근무 상 황 및 근무자세,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0				
	소 계		10점				
(5) 가산점(5점이내)							
합		계	100점				
총 합 의 견	1 차 평정자						
	2 차 평정자						

학부장 성 명 (인)[1차 평정자]

자연과학대학장 성 명 (인)[2차 평정자]

별표 3

연구활동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자연과학대학

대상자	소속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직명 : 성명 :		학부			비고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및 기준	배점	1차	2차	
연구실적물 평가 (20점)	연구실적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점평균(5.0만점)×4		20			
총괄연구실적 (15점)	업적들의 우수성 및 총괄연구활동 (연구실적물 평가위원 평가)		5			
	업적들의 우수성 및 총괄연구활동 (학부(과)장 및 학장평가)		10			
	소계		15			
그 밖의 연구활동 (5점)	연구과제수행 및 산학협동실적		5			
계			40			

※ 평가기간

- 재임용, 승진임용: 본교 당해직급 재직기간의 총괄연구실적
- 정년보장임용 : 본교 임용이후의 전체 총괄연구실적
-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평가 점수 5점, 심사위원 5명의 평가 점수 중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의 평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점수를 평균한다

별표 4

봉사활동 평가기준 및 평가표

자연과학대학

대상자	소속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직명 : 성명 :	학부	평정점			비 고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평점	
교내활동 및 교외활동 (10점)	대학내 봉사활동(보직 또는 위원회 참여내역 등) 및 학회, 공개강좌,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학술적 참여 실적 등	10-0				
계		10				

별표 5

기관장 평가기준 및 평가표

자연과학대학

대상자	소속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직명 : 성명 :	학부	평정점			비 고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및 기준	평점	1차	2차	평균	
법령준수 및 전임교수로서의 자질, 인품 (10 점)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개인생활의 청렴도, 근무상황 및 근무자세,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 의 야기 등	10-0				
계		10				

2. 학생 지도 실적

가. 지도학생 수

1. 학사과정 지도학생 수 :	명
2. 학사과정 전공지도학생 수 :	명
3. 석사과정 지도학생 수 :	명
4. 석사 배출 학생 수 :	명
5. 박사과정 지도학생 수 :	명
6. 박사 배출 학생 수 :	명
7. 석박사통합과정 지도학생 수 :	명
8. 석박사통합과정 석사 배출 학생 수 :	명
9. 석박사통합과정 박사 배출 학생 수 :	명

나. 학생 지도에 있어서의 특별하게 기여한 사항(우수사례 등)

--

3. 기 타(신규교과개발, 교양과목강의, 계절학기강의, 책임시간초과강의, 대형강의 등)

--

(별표 3 내역)

II. 연구활동

(대상자 성명:)

1. 연구실적 현황

(단위 : 편수 또는 건수)

구 분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특 허
현직기간 실적만 기재			

2. 총괄연구활동(현직기간 중 논문만 작성)

1. 대표논문(impact factor 또는 인용 횟수 등 참고자료 기재)
2. SCI 논문(impact factor 기재)
3 기타논문

※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하십시오

3. 기타 연구활동(연구과제수행 및 산학협동실적 포함)

--

(별표 4 내역)

Ⅲ. 봉사활동

(대상자 성명:)

1. 학과(부)내 봉사활동(학과(부)내의 보직 또는 위원회 참여 내역 등)

2. 대학내 봉사활동(보직 또는 위원회 참여 내역 등)

3. 학회, 공개강좌,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학술적 참여 실적

※ 보직(또는 위원회)명, 기간, 임용권자, 주요활동사항, 역할 등 기재

(가산점 관련)

Ⅳ. 기타업적

(대상자 성명:)

1. 현직기간 중 수상, 서훈, 표창 등

2. 재직기간 중 수상, 서훈, 표창 등

※ 수상년도, 상(또는 서훈·표창)명, 수상분야, 상금(연구비 등) 등 기재

자연과학대학 소속 서울대학교 평의원 선출에 관한 내규

제정 2012. 9. 7.

개정 2012. 12. 6.

2014. 12. 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자연과학대학 소속 서울대학교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의원 자격 및 임기)

- ①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장, 부학장 및 학부(과)장은 평의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보궐 선출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평의원 후보) 평의원 후보자는 학부(과)장 또는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평의원 선출방법)

- ① 평의원은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선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보궐 선출은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시행한다.
- ③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출시기에 따라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 ④ 평의원 후보자에 대해 평의원 선출 필요인원 수 만큼 기표하며, 평의원 선출 필요인원 수만큼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 시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5조 (결과통보) 학장은 자연과학대학 소속 서울대학교 평의원으로 선출된 교원을 지체 없이 평의원회에 통보한다.

부칙 (2012. 9. 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공간 관리 및 운영 내규

제정 2014. 10. 10.

개정 2017. 12. 29.

제 1 조 (근거규정 및 목적)

이 내규는 자연과학대학 공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공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자연대 관리 공간의 운영과 효율적 이용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연대 관리 공간의 배정)

자연대 관리 공간은 공간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의 [공간 사용 유형별 순위], [연구과제 규모 및 간접비 납부 형태 순위]에 근거하여 자연과학대학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한다. 단, 학장이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학장단이 배정을 결정하고 기획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각 영역별 배정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공간 사용 유형별 순위]

순위	공간 사용 유형
1순위	자연과학대학 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공간
2순위	자연과학대학 내 연구센터(단) 및 공동 장비 설치 공간
3순위	자연과학대학 내 교원의 연구 공간
4순위	학장이 인정하는 외부 초빙교원 등을 위한 공간
5순위	학장이 인정하는 외부 공간

[연구과제 규모 및 간접비 납부 형태 순위]

순위	연구과제 규모 및 간접비 납부 형태
1순위	자연과학대학(기초과학연구원 포함)에 간접비를 내는 학제간 대형 단위 연구과제(자연대 교원의 연구비 총합이 5억원 이상인 과제)
2순위	자연과학대학(기초과학연구원 포함)에 간접비를 내는 단일학부(과) 대형 단위 연구과제(자연대 교원의 연구비 총합이 5억원 이상인 과제)
3순위	학제간 또는 단일학부(과) 초대형 단위 연구과제(단위 연구과제 규모 10억원 이상, 자연대 교원의 연구비 총합이 5억원 이상인 과제)
4순위	자연과학대학(기초과학연구원 포함)에 간접비를 내는 학제간 중형 단위 연구과제(자연대 교원의 연구비 총합이 3억원 이상인 과제)
5순위	자연과학대학(기초과학연구원 포함)에 간접비를 내는 단일학부(과) 중형 단위 연구과제(자연대 교원의 연구비 총합이 3억원 이상인 과제)

제 3 조 (자연대 관리 공간의 배정 순위)

전체적인 배정 순위는 위 [공간 사용 유형별 순위]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배정 순위를 결정한다. 동급 순위인 경우, [연구과제 규모 및 간접비 납부 형태 순위] 및 자연대 기여도를 감안하여 세부 공간 배정 순위를 정한다. 단, 자연과학대학 기획위원회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학장의 인준을 거쳐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최대 배정 면적 제한 등)

센터(단)나 개인 교원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건물(구역)단위로 배정 가능 면적의 최대 30% 이내로 제한하고, 위 제 2 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공간수요자의 수와 총신청면적을 고려하여 배정면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text{최대배정면적}] < [(\text{총 신청면적} - \text{당사자 신청면적}) / (\text{신청인의 수} - 1)] \times 3$$

단, 위 식의 적용 결과와 100 m² 중 적은 면적을 최대배정면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초기 공실율, 공간 배정 회전율)

- ① 자연대 관리 공간의 배정은 2년 주기로 공간 배정 회전율이 30% 이상 되도록 운영한다. (2년 주기로 배정 가능한 공간이 최소 30%가 되도록 하며, 공간수요자가 있을 경우 건물(구역)별 전체 배정 공간의 30% 이상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간수요자가 부족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건물(구역)별 최초 자연대 관리 공간의 배정은 배정 가능한 전체 공간의 최대 70%로 하고 30%를 공실로 하여 배정의 한 주기가 돌아오는 2년 동안의 신규 배정 수요에 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공간배정 신청 시기 등)

공간배정신청과 배정은 매년 1월 - 3월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모든 신청건에 대해 일괄 심의하여 사용자와 면적을 결정한다. 단, 배정신청면적 단위가 100 m² 이상일 경우, 각 신청건은 기획위원회에서 개별사안으로 특별 심의를 하도록 한다.

제 7 조 (배정기간)

- ① 배정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자연과학대학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단, 센터(단)운영을 위한 공간은 센터(단)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기본 2년의 사용기간 후 연장 사용할 시는 제반 여건에 따라 시설유지개선비 또는 임대료를 차등 적용 받을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배정받은 기간을 초과한 후, 배정자(자연과학대학 학장)의 의사에 반하여 배정공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2014. 10. 10)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배정된 공간에 대하여는 제8조 시설유지개선비,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적용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부 칙 (2017.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9. 7. 2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겸임교원등(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세칙은 자연과학대학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제3조(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선정)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이하 ‘학부(과)장등’이라 한다)은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을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신규채용 절차 및 채용 방법) ① 신규채용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따른다.

② 공개채용을 위한 공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자연과학대학 또는 학부(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제출서류) 신규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개채용지원서 1부
2. 졸업·학위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제6조(신규채용후보자 심사항목) ① 신규채용 심사항목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50점), 교육 및 연구경력(25점), 총괄연구업적(25점)으로 한다.

②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은 지원자의 전공과 담당교과목 간의 일치 및 유사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은 해당 분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④ 총괄연구업적은 연구업적의 적합여부, 연구활동의 지속성 및 우수성, 학문적 기여도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7조(신규채용 심사위원) 학부(과)장등은 해당 전공(교과)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3명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신규채용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제6조에서 정한 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각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취득점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9조(특별채용) ① 특별채용은 학기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과건·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비전임교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이 경우 해당 학부(과) 및 협동과정은 특별채용 사유, 분야, 인원 등을 명시하여 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고 및 접수 절차는 생략하며, 심사는 공개채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재임용) 비전임교원을 재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부(과)장등은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재임용추천서, 활용계획서 등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은 재임용 추천된 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의 심사결과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추

천 여부를 심의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신규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자를 해당 비전임교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복무) 본교 이외의 타 기관 등에 출강·겸직하고자 하는 전일제 비전임교원은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임사항) 신규채용 공고, 지원서류 접수, 서류심사는 해당 학부(과) 및 협동과정에 위임하여 실시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 7.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칙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비전임교원(해당 비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

자연과학대학 강사 임용 시행세칙

제정 2019. 6.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관련 제 규정과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채용

제3조(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선정) 학장은 예산, 전임교원 책임시간, 교과목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 및 전공별 채용 가능 인원을 정하고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이하 “학부(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4조(지원자격) 자연과학대학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 가. 박사수료자의 연구경력은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년수에서 석사과정 재학년수를 제한 후 10분의 7의 비율로 산정한다.
 - 나. 그 외 교육 및 연구경력은 별표에 의한다.
2. 본교 강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5조(채용공고) 강사 공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연과학대학 및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2. 지원자격
3. 임용예정시기 및 임용기간
4.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5. 서울대학교 및 자연과학대학 강사 채용 방침(심사기준)
6. 결과통지방법
7. 기타 유의사항

제6조(서류접수) 강사 공개채용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개채용지원서 1부
2. 학력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3.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4. 자기소개서(주요 교육 및 연구실적, 그 외 교육 관련 활동경험 등) 1부

5. 교육계획서(강의담당 가능과목 및 강의제안 등) 1부
6. 총괄연구업적(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부
7.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최종학위가 박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제7조(심사위원) ① 학부(과)장 등은 각 모집분야에 대해 담당강의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②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8조(평가항목) ① 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10점), 교육경력(15점), 총괄연구업적(10점),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15점)으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발표 또는 면접(35점), 임용 적합성(15점)으로 한다.

제9조(서류심사) ① 학부(과)장 등은 제7조에 따라 교내외 인사 중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제2항에 따라 심사한다.
 ② 서류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별지 1호 및 2호 서식)한다.
 1.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10점):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해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며, 완전 일치하는 경우 “상(10점)”, 상당부분 일치하며 채용에 무리가 없는 경우 “중(5점)”, 부분적으로 근접하나 상당부분 불일치하며 채용에 무리가 있는 경우 “하(0점)”으로 평가한다.
 2. 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 주요 교육경력 및 연구활동을 평가한다.
 가. 교육경력(15점):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의 강의경력, 교육활동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나. 총괄연구업적(10점):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에 대한 지원자 연구업적의 적합여부, 연구활동의 지속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3.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15점): 강사로서의 적성, 교육목표, 계획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③ 각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을 서류 평가점수로 하며, 서류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인정하고 35점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면접심사) ① 학부(과)장 등은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접일정을 확정하고 제7조에 따라 3명 이상의 면접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면접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면접 심사위원은 서류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② 면접심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별지 3호 및 4호 서식)한다.
 1. 발표(35점): 강의 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적합성 그리고 전달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한다.
 2. 면접(35점): 강사로서의 인성 및 태도, 강의역량, 기타 역량(학문적·교육적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③ 학부(과)장 등은 면접심사가 종료된 후 종합평가결과(별지 5호 서식)를 학부(과) 및 전공 교수회의 회의록(또는 학부(과) 및 전공 교수회의가 학부(과) 및 전공 인사위원회에 위임한 경우 관련 회의록)과 함께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 ①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는 학부(과) 및 전공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 개인별로 임용적합성(15점)을 심사하고 각 인사위원의 임용적합성 평가점수의 평균을 임용적합성의 평가점수로 산출한 후, 공개채용에 대한 가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② 필요한 경우 학부(과)장 등의 추가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③ 학장은 인사위원회의 임용적합성에 대한 평가 및 투표 결과를 토대로 총점 기재한 후 개조식 또는 서술형으로 총평을 작성(별지 5호 서식)한다.
- ④ 학장은 총점이 9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신규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일 채용분야 후보자의 총점이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발표 또는 면접(35점) 평가점수의 순으로 추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⑤ 신규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동일 채용분야 후보자의 평가항목 중 발표 또는 면접(35점) 평가점수의 순으로 추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다음 순위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신규채용후보자 추천)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 1. 신규임용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 법령상의 적격여부
- 2. 학부(과) 및 전공 심의결과
- 3.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② 학장은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규채용 심사결과를 대학 인사위원회 회의록(사본)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고 학부(과) 및 전공으로부터 신규채용후보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총장에게 추천한다.

- 1. 신원진술서
- 2. 인사기록카드
- 3. 졸업·학위증명서
- 4. 경력증명서
- 5.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6. 사증 사본 (외국인에 한함)
- 7. 그 밖에 총장이 요청한 서류

제2절 특별채용

제13조(적용범위) 특별채용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모집방법) 학부(과)장 등은 강사의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학장에게 보고 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후보자를 모집한다.

- 1. 학부(과)장 등이 특별채용후보자 모집계획을 학부(과) 및 전공 소속 교원 전원에게 공지하고 교원이 후보자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후 학부(과)장 등에게 추천하여 학부(과) 및 전공의 교수회의(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 2. 학부(과) 및 전공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특별채용후보자 신청을 받아 학부(과) 및 전공의 교수회의(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제15조(학부(과) 및 전공심사)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합하여 실시(별지 6호 및 7호 서식)하고 그 결과(별지 8호 서식)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는 학부(과) 및 전공의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적합성을 심사(별지 8호 서식)한 후 특별채용에 대한 가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제17조(공개채용 준용) 그 밖에 특별채용에 필요한 심사위원,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재임용

제18조(재임용심사 대상자) ① 학장은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임용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학부(과)장 등에게 통보하고, 학부(과)장 등은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통지 시 심사기준, 심사일정,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강사는 임용예정일 4개월 전까지 재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 포기서(별지 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채용부터 통산 3년 만료되는 강사) 학장은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이 만료되는 강사(이하 “만료자”라 한다.)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학부(과)장 등에게 통보하고 학부(과) 및 전공에서는 학부(과) 및 전공 교수회의(또는 학부(과) 및 전공 교수회의가 학부(과) 및 전공 인사위원회에 위임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한다.

1. 만료자의 채용분야에 대해 공개채용을 한다.
2. 만료자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절차는 재임용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20조(학부(과) 및 전공 심사) ① 학부(과)장 등은 제7조에 따라 교내·외 인사 중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교육활동(80점), 기관장평가(20점), 가산점으로 나누어 심사하고 종합평가결과(별지 9호 서식)를 학부(과) 및 전공 교수회의 회의록(또는 학부(과) 및 전공 교수회의가 학부(과) 및 전공 인사위원회에 위임한 경우 관련 회의록)과 함께 임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활동(80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강의평가(40점): 직전학기 강의평가 점수로 평가한다.

가. 담당강좌가 두 강좌인 경우: 담당강좌 모두 4.0이상인 경우(40점), 한 강좌는 4.0이상, 나머지 한 강좌는 3.0이상 4.0미만인 경우(30점), 담당강좌 모두 3.0이상 4.0미만인 경우(20점), 담당강좌 중 한 강좌라도 3.0미만이 있는 경우(0점)으로 평가한다.

나. 담당강좌가 한 강좌인 경우: 4.0이상인 경우(40점), 3.0이상 4.0미만인 경우(20점), 3.0미만인 경우(0점)으로 평가한다.

2. 강좌운영(30점): 강의내용과 방법의 적합성 및 우수성, 강의 운영과 관련된 성실성(휴·보강 현황 등)을 평가한다.

3. 그 밖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10점): 기타(교내·외 교육 및 봉사활동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③ 기관장평가(20점)은 강사로서 대학 교육에의 기여도, 교육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강사로서의 품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가산점은 수상, 서훈, 표창 등이 있는 경우 5점 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

⑤ 다만,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교과목, 팀티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방법은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 ①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는 학부(과) 및 전공에서 제출한 서류 및 회의록을 근거로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가항목에 따라 2차 평가를 실시(별지 9호 서식)한다.

② 필요한 경우 학부(과)장 등의 추가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학부(과) 및 전공의 평가점수와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재임용 평가점수로 하며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인정하고,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한다.

제22조(소명기회 부여)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강사가 재임용 심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학장은 해당 강사에게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로 전달하며 강사가 재임용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인사위원회의 장소와 시간을 15일 전에 통지하여 소명하게 하고,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재임용 추천)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임용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1. 재임용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 법령상의 적격여부
2. 학부(과) 심의결과
3. 자연과학대학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부칙(2019. 6. 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해당 강사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